

「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」
검 토 보 고 서

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I. 제안이유

-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II. 주요내용

- 2016년도 평창군 기금조성 규모는 총 5개 기금 19,04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3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-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 금 명	2015년도말 조 성 액 [㉠]	2016년 운용계획		2016년도말 조 성 액 [㉡] $(d)=(a)+(b)-(c)$	증 감 [㉢] $(e)=(d)-(a)$
		수입 [㉣]	지출 [㉤]		
합 계(5건)	18,363,608	1,799,128	1,116,253	19,046,483	682,875
통합관리기금	8,144,607	144,700	135,888	8,153,419	8,812
사회복지기금	5,670,659	834,831	88,800	6,416,690	746,031
체육진흥기금	3,451,788	360,886	50,000	3,762,674	310,886
식품진흥기금	110,689	39,937	41,565	109,061	△1,628
재난관리기금	985,865	418,774	800,000	604,639	△381,226

Ⅲ. 검토내용

□ 기금조성 규모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9,046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3.7%인 683백만원이 증가 하였음.

□ 기금운용계획

-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4,246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전입금 1,400백만원, 보조금 34백만원, 융자금회수 36백만원, 예치금회수 2,447백만원, 이자수입 318백만원, 기타수입 11백만원이며
-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4,246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비 융자성사업비 960백만원, 융자성 사업비 20백만원 예치금 3,130백만원, 예수금원리금상환 136백만원 임.

□ 기금별 운용계획

가. 평창군통합관리기금(기획감사실)

- 설치목적 :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 용자
- 기금운용계획

▶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계	예치금회수	이자수입
389,307	244,607	144,700

▶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계	예치금	예수금원리금상환
389,307	253,419	135,888

-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44백만원, 이자수입 145백만원이며,
- 지출계획은 예치금 253백만원, 사회복지기금, 식품진흥기금, 체육진흥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에 136백만원 임.

나. 평창군사회복지기금(주민생활지원과)

- 설치목적 : 노인, 여성,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
- 기금운용계획

▶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계	전입금	융자금회수	예치금회수	이자수입	기타수입
1,815,396	700,000	36,436	980,565	91,395	7,000

▶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계	비용자성사업비	융자성사업비	예치금
1,815,396	68,800	20,000	1,726,596

-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700백만원, 융자금회수 36백만원, 예치금회수 981백만원, 이자수입 91백만원, 기타수입 7백만원 임.
- 지출계획은
 비용자성사업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8백만원,
 장애인복지 7개사업 17백만원, 여성복지 6개사업 22백만원,
 노인복지사업 HAPPY700평창실버가요제 22백만원
 융자성사업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0백만원
 예치금 1,726백만원 임.

다. 평창군체육진흥기금(경제체육과)

- 설치목적 : 평창군 체육진흥
- 기금운용계획

▶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계	전입금	예치금회수	이자수입
591,514	300,000	230,628	60,886

▶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계	비용자성사업비	예치금
591,514	50,000	541,514

- 기금의 수입계획은
전입금 300백만원, 예치금회수 231백만원, 이자수입 61백만원 임.
- 지출계획은
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사업에 50백만원, 예치금 542백만원 임.

라. 평창군식품진흥기금(환경위생과)

-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
- 기금운용계획

▶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계	보조금	예치금회수	이자수입	기타수입
45,626	34,000	5,689	1,937	4,000

▶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계	비용자성사업비	예치금
45,626	41,565	4,061

○ 기금의 수입계획은

보조금 34백만원, 예치금회수 6백만원, 이자수입 2백만원,
기타수입 4백만원 임.

○ 지출계획은

지역대표음식 홍보 15백만원,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등 5개사업
27백만원, 예치금 회수 4백만원 임.

마. 평창군재난관리기금(안전건설과)

○ 설치목적 :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

○ 기금운용계획

▶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계	전입금	예치금회수	이자수입
1,404,639	400,000	985,865	18,774

▶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계	비용자성사업비	예치금
1,404,639	800,000	604,639

○ 기금의 수입계획은

전입금 400백만원, 예치금회수 986백만원, 이자수입 19백만원 임.

○ 지출계획은

응급복구장비 임차 200백만원, 응급복구 자재구입 200백만원
재난, 재해예방사업 400백만원, 예치금 605백만원 임.

IV. 검토의견

□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평창군 개별 기금관리조례에 따라 총 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2016년도 평창군의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대비 3.7%가 증가한 19,046백만원이며
-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치금회수가 대부분이며, 지출은 비 용자성사업비, 예치금등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다만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,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.

V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【 관련 법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
-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-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·관·항으로, 세부 항목의 단위는 세항·목으로 각각 구분한다.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